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3155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교통위원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 규정된 용어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를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9호)

##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를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9호 중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를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br>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br><br>1. ~ 3. (생 략)<br><br><신 설>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br>①-----<br>-----<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br><u>4.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 및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u>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br>①-----<br>-----<br>-----<br>-----.<br><br>1. ~ 3. (개정안과 같음)<br><br><u>4. 제동장치 없는 퍽시자전거-----</u><br>-----<br>----   |
| 4. (생 략)<br><br>② · ③ (생 략)<br><br>제8조(교통안전교육) ①<br>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br><br>1. ~ 8. (생 략)<br><br><신 설> | 5. (현행 제4호와 같음)<br><br>② · ③ (현행과 같음)<br><br>제8조(교통안전교육) ①<br>-----<br>-----<br>-----.<br><br>1. ~ 8. (현행과 같음)<br><br><u>9.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해당 자전거를 이용한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지도</u> | 5. (개정안과 같음)<br><br>② · ③ (개정안과 같음)<br><br>제8조(교통안전교육) ①<br>-----<br>-----<br>-----.<br><br>1. ~ 8. (개정안과 같음)<br><br><u>9. 제동장치 없는 퍽시자전거-----</u><br>-----<br>-----<br>-----. |
| 9. (생 략)<br><br>② · ③ (생 략)   | 10. (현행 제9호와 같음)<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10. (개정안과 같음)<br><br>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동장치 없는 휠시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 및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동장치 없는 휠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해당 자전거를 이용한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지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br><br>1. ~ 3. (생 략)<br><br><u>〈신 설〉</u>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br>-----<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br><u>4.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 및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u>          |
| 4. (생 략)<br><br>② · ③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br><br>1. ~ 8. (생 략)<br><br><u>〈신 설〉</u>                |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br>-----<br>-----.<br><br>1. ~ 8. (현행과 같음)<br><br><u>9.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해당 자전거를 이용한 탑승행위 금지에 관한 지도</u> |
| 9. (생 략)<br><br>② · ③ (생 략)   | 10. (현행 제9호와 같음)<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